

병영문화와 군대인권: 육군의 인권개선 추진실태를 중심으로*

정근식**

한국에서 병영문화와 군대인권에 대한 관심은 민주화 이후 급속히 확대되었다.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과거의 군대에서의 인권침해뿐 아니라 현재의 군대인권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육군 또한 신세대 장병들이 적절한 관리를 위해 인권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최근의 조사를 보면, 군대인권은 급속히 개선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군대인권의 개선이 전투적 상승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사회와 군 당국간의 인권실태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크고, 또한 장병의 권리보호제도를 둘러싸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군 당국간에는 몇 가지 이견이 존재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대인권에 관한 체계적이고 개방적인 연구와 함께 당사자들간의 신뢰의 축적이 필요하다.

주제어: 병영문화, 군대인권

1. 문제의 제기

근래에 우리 사회에서 병영문화와 군대인권에 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질차적 정치민주화가 정착되면서 인권의식이 고양되

* 이 글의 초고는 2006년 6월 8일 육군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발표되었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역사사회학 및 사회운동론. ksjung@snu.ac.kr

고, 사회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군대안에서 발생한 과거의 인권침해사건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시도가 계속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에 대한 부적응으로부터 오는 신세대형 사건들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또한 과거라면 별로 알려지지 않고 은폐되거나 간과되었을 사건들도 이제는 교통통신의 발달, 사회적 투명도의 증가에 따라 쉽게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군대인권의 문제는 비교적 근래에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되었다. 전형적인 군 인권침해 사례인 군내 구타와 가혹행위, 사망 및 자살사고, 성폭력 등의 사고가 계속되고, 이에 관한 언론의 보도가 증가하면서, 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이나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불안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군 인권실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나아가 인권관련사고의 처리방식을 포함한 군대인권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나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문제는 민주화 이전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또는 제기되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들이지만, 2000년 이후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으며, 국민개병제라는 기본 원칙, 또는 병사들의 부대 배치권까지 재검토하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갔다.

인권침해에 관한 사회적 감수성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권개선 노력도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군대인권을 개선하려는 각종 기구가 설치되었다. 2000년 10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고, 2001년 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영문화와 군대인권실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여러 차례 의미있는 군대 인권 실태조사(김선택, 2002; 김형태 외, 2002; 송광섭 외, 2003; 권인숙 외, 2004; 이계수 외, 2004;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2005; 한홍구 외, 2006)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많은 개선책을 정부기구에 권고하였다.

군 당국의 인권개선 노력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003년에는 군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2005년에는 국방부 내에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육군 인권개선 위원회,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장기 계획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2005년 1월의 육군훈련소 화장실 가혹행위

사건을 계기로 장병 기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감찰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육군 인권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5년 6월 GP내무반 총기난사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창군 이래 최초로 민관군 합동으로 병영문화 전반을 검토하는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2005년 육군본부는 '군대와 기본권'이라는 군 인권교육 지침서를 마련하였고, 이를 기초로 최근에는 국방부가 '장병기본권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병영문화개선이나 장병인권에 관한 많은 쟁점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군 인권 개선실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양하고 그 편차 또한 심하다. 많은 조사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개선상황이 충분히 시민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기초하여 군대인권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맥락, 시민사회의 군대인권에 대한 인식, 군 내부의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개혁의 성과들을 정리해보고, 시민사회의 주문과 군의 입장의 차이가 두드러진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것 인지를 점검해보려는 것이다.

2. 군대인권과 병영문화를 보는 시각

1) 주요 연구성과

세계의 주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남북이 분단되었으며, 전쟁을 경험한 한국에서 군대의 비중이나 사회적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군대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몇몇 예외(백종천 외, 1994; 홍두승, 1996; 온만금 외, 2005)를 제외하면 매우 저조하며, 더구나 군대인권이나 병영문화에 관한 연구는 최근이야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분단체제하에서 군대의 문제가 일종의 성역으로 간주되어 객관적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병사들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거시적으로는 한 국가에서 군대가 놓

인 정치경제적 위상, 군에 대한 시민적 인식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병사들의 생활 시설과 군대내 사회적 관계라는 내부적 요인들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장병들의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는 군대 충원제도와 장병들의 법적 지위, 군 생활을 둘러싼 물리적 시설환경과 조직사회학적 문제, 인권실태에 관한 군 내부 및 시민사회의 인식 등으로 이루어진다.

군 인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연구용역 사업으로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 이래 「군대내 구급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현황파악」, 「한국내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 여부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등을 수행하였으며, 2003년에는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등의 실태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중에서도 군대인권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였던 「군대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는 좀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원인을 구타, 폭행, 가혹행위와 이러한 행위가 존속될 수밖에 없는 군 구조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군대 내의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 이유를 “국가가 군인을 군인정신과 복무규율에 따라 관리·통제해야 하는 전투력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2002, 184). 이와 함께 군대인권의 문제가 군 조직상의 문제들로부터 유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에는 군 지휘관들의 법치행정에 대한 무관심, 명령중심주의로 인한 상하 의사소통의 부재, 사회적 변화에 대한 무감각, 군 사법권의 지휘권 확립 수단화 관행 등이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는 군인을 단지 관리 통제의 대상이 아닌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위해 군인법 제정, 병사들의 권리항목의 구체화를 권고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군대내 폭행 및 가혹행위의 방지책을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해결로 나누어 대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군 인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와 토론이 활성화되었다. 민간 차원의 연구들은 신체의 자유, 구타나 가혹행위 등의 문제를 넘어서서 병영문화나 시설, 복지 등으로 관심을 확장하였다. 군 인권에 대

한 민간 차원의 연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군에서도 인권 문제를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하는 흐름이 생겨났다. 이전까지 군에서 나온 구타, 가혹행위, 자살 등에 관한 연구 자료는 대부분 '군기사고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현역 군인이나 군 관련 종사자, 군종신부, 군 법무관 등의 학위논문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국방연구원이 2004년 실시한 「장병기본권 확립 방안 연구」는 군의 입장에서 군대내의 인권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한 최초의 연구이며, 군 인권에 대한 민간차원의 논의에 대한 대응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군 인권 상황에 대한 민간과 군 사이의 심각한 인식의 괴리가 있다고 보고 그 원인을 의식·가치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의 심화 및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군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약화, 인권 문제에 대한 군의 소극적, 방어적 태도 등 두 가지로 지적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군인의 기본권에 대해, 군인은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공법상 필요에 의해 법 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에 따라 부분적인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연구는 장병의 인권과 관련한 부대관리의 제 요소를 인권교육, 병영관리, 의사소통, 사후활동, 평가활동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별로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따르면, 군에서 실시중인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사고예방과 군기확립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병사의 자율성 제고에 실패했으며, 관리위주의 교육에 머무르고 있고, 병영관리 측면에서는 적발과 처벌 위주에 관리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의사소통 및 고충처리와 관련해서는 인권침해 피해자나 고충을 가진 병사의 접근 용이성이나 활용이 미흡함이 지적되었다. 인권침해에 대한 사후대응 측면에서는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지휘책임의 부과로 인한 은폐, 축소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쌍벌원칙 적용으로 피해자 구제가 곤란한 점, 구타/가혹행위 및 성범죄 사고 피해자에 대한 격리, 치료 등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평가활동 측면에서는 군내 인권 전담기구의 부재로 인한 종합적인 진단, 평가 기능이 미흡했으며 부대 정밀 진단을 통한 교육, 점검, 시정조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기초로 군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을, 군 기본질서와 군사적 효율성의 견지, 민주주의 성숙과 사회발전 단계에 조응하는 군인 권리체계의 확립 등 두 가지로 제시했다.

군 인권에 대한 이런 연구들은 그동안 군기사고로 치부되던 사안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조명한 것으로, '구타, 폭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제한적인 질문을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 고무하였다. 그런 가운데, 2005년에 발생한 군내 사고들은 큰 충격을 주었다. 전반적으로 군대 인권에 관한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었고,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군대인권을 재검토하도록 만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공회대 연구팀으로 하여금, 신체의 자유라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군인의 사회적, 경제적 기본권까지를 광범위한 포괄한 조사를 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군인 인권의 주요 항목으로 신체의 자유(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 일과 휴식의 권리,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의·식·주 환경, 휴가제도, 소원수리제도, 월급, 의료권, 사회적 차별, 병사들의 권리의식 등으로 설정하여 현지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또한 병사들을 현역과 최근 제대한 예비역 등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또 군 간부의 인권실태 및 병사인권에 대한 인식까지 포함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근래의 인권개선실태를 확인하고, 남아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2) 군대인권을 둘러싼 쟁점

사회학자 고프만(1961)은 일찍이 군대를 총체적 제도(total institution)의 하나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첫째 모든 생활이 한 장소에서 그리고 하나의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지며, 둘째, 일상활동의 각각의 국면이 동일한 대접을 받고 또 동일한 일을 하도록 요구받는 집단 속에서 수행되며, 셋째, 일상생활이 공식적 명령에 따라 부과되는 일련의 행위들을 수행하도록 잘 짜여진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넷째, 다양한 일들이 제도의 공식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디자인된 하나의 합리적 계획에 따라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총체적 제도에 인권이나 기본권의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가?

군의 인권문제를 논의할 때 제기되는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군인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는 특별권력관계론으로 군인과

국가는 특별한 권력관계에 놓여 있으며, 군인은 한편으로는 일반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동시에 군사행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받는 존재(한국국방연구원, 2004)라고 본다. 즉 장병들의 기본권은 이들이 특수신분관계에 놓여 있어서 실정법에 의해 제한가능하며, 조직의 특성과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하여 군인은 단지 '제복을 입은 시민'일 뿐이며,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는 명료하게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는 군인지위 법정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나 상관의 포괄적 권력을 인정하는 특별권력관계론이 과거의 역사적 유물이라고 간주한다. 이 입장에서는 군인들의 의무 뿐 아니라 기본권이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양자는 이념, 제도 뿐 아니라 의식과 관행의 수준에서 대비된다. 특히 군인복무규율에서 드러나는 장병들의 의무를 강조하는가 아니면 장병들이 누려야 할 구체적인 권리목록을 강조하는가의 차이로 드러난다.

이와 연관되어 제기되는 두 번째 쟁점은 병사들의 인권신장과 군 조직관리의 필수요소인 군 기강의 관계, 또는 전투력과 상관관계이다. 즉, 병사들의 인권보장이 전투력에 손상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오히려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이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오랫동안 군대사회학의 연구주제가 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결론 또한 쉽지 않은 것이다.

보통 이 논쟁에는 '군기'라는 요소가 개입하는데, (과도한) 인권보장은 군기를 흐트러뜨리며 이는 곧 전투력의 훼손을 낳는다고 보는 전통적인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견해 또한 만만치 않다. 예컨대 군대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군대운영 및 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보고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군에서는 이를 군 기강해이로 보고 대처함으로써, 민군간의 인식 차이를 노정한다(김광식, 2004). 사실 이런 견해는 과거의 엄정한 규율과 강력한 일상적 통제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군대조직의 효율성에 관한 고전적인 연구들에서 전투력은 엄정한 관료제적 상하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보다는 하급부대내 구성원들의 비공식적이고,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조직이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물론 과거와는 현저하게 다른 조건에 놓여 있는 현재의 군대조직에서 전투력은 첨단무기와 정보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고전적인 연구의 결과

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나 인간적 신뢰에 바탕을 둔 협동적 관계가 중요한 전투력의 요소임은 의심할 수 없다. 최근 군에서는 인권담론을 시대적인 추세로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군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않고, 전투력을 저해하거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장병의 기본권 문제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과제이자 쟁점은 자유권적 기본권 중에서 신체의 자유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오래된 병영문화 속에서 사적 제재가 잔존하고 있고, 징계 및 영창제도가 법정화된 절차보다 지휘관의 자의에 의해 운용되고 있을 때는 이런 지적 자체가 어렵다. 이런 현상을 군대 인권 또는 장병기본권의 시각에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군대 민주화의 지표이자 산물이다.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기본권 침해는 폭행과 상해, 가혹행위와 강요, 욕설 기타 인격모독, 성추행과 성희롱 이외에, 위법적 징계, 군 수사기관이나 군사법원, 군 행정기관의 불법행위, 각종 형태의 차별 등이다. 이 경우 신체의 자유의 범위가 논란이 된다. 특히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소수자의 권리가 신체의 자유에 속하는가의 여부는 매우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넷째, 기본권 침해시의 구제 제도의 효율성을 둘러싼 논쟁이 있다. 기본권 침해 시에 신고, 고충처리제도, 인사소청제도,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각종 보상 신청 등의 수단이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는 주장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기 쉽다. 그동안 구제제도가 완비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사병들의 문제해결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이것은 참여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참여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주장 사이에서 많은 논의들이 헛도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군대인권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많은 쟁점들은 인권현실과 인권담론의 괴리로부터 발생한다. 군대인권의 문제는 흔히 시민사회와 군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수반한다. 김광식 등의 연구(2004)에서 장병인권실태를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군은 사고나 사건의 발생정도(심각한 수준/감소추세), 병영문화의 실태(구시대적 유산잔존/소멸중), 장병인권구성요인의 비중 등에서 서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에서 장병인권은 통제문화, 의사소통, 복무여건 등으

로 구성되는데, 시민사회는 통제문화를 주목하고, 군은 복무여건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의 괴리는 복무환경이 시대적 발전추세보다 느리게 개선된다는 것, 그리고 군대문화의 발전과 개선된 병영환경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며, 관련 통계 및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기 쉽다. 이와 함께 사태의 진단에서 나타나는 시민사회와 군 간의 입장의 차이는 신뢰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즉 시민사회는 군이 지휘질서와 군의 기강만을 중시하여 인권개선에 소극적이며, 군 스스로에 의한 인권개선은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군은 시민사회가 과도하게 군의 특성을 무시하고 군의 노력을 폄하한다고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오랫동안 두 영역이 서로 단절된 채 개방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던 과거의 유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병기본권 보장을 통한 인권상황의 개선에 시민사회와 군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이런 공통의 인식에 기반하여 두 시각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군대 인권 논의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현재의 법률과 군대제도의 틀 안에서 장병들의 인권을 다루는가, 아니면 이들을 변수로 생각하면서 다루는가의 문제이다. 근대 국민국가는 상비군을 두고 모든 시민들을 '국민'으로 규정하면서 국민개병제를 발전시켰다. 군대의 성원을 충원하는 방식은 '병무 서비스'를 하나의 의무로 규정하여 '병역'이라는 관념이 발전하였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성인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병역 의무 이행자에게 서비스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근래의 젠더적 시각의 발전에 따라 이런 교환이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병역의 분배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의 문제, 계층적 불균등성의 문제, 그리고 '건강중심주의'는 현대의 군대가 점차 첨단기술 의존적, 경제의존적 조직이 되면서 보편타당성을 잃게 되었다. 세계화에 따라 국적 문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상황도 이런 병무 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병영문화의 변천

유감스럽게도 오늘날까지 한국의 병영문화의 형성과 변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병영문화의 변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군대인권을 둘러싼 시각과 쟁점들을 이해하려면, 보다 장기적인 맥락에서 한국의 병영문화의 형성과 그 변동과정을 검토해야 한다.

군 창설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한 한국전쟁은 병영문화의 원형을 형성한 핵심적 요인으로 꼽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 시기에 매우 빈곤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팽창된 군대규모를 유지해야 했으므로 병사들의 생활조건은 매우 열악했다. 이 때문에 물질적 지원보다는 이념과 정신력을 강조함으로써 전력을 유지하려 했고, 이는 유사한 조건에서 발달했던 구 일본군의 병영문화가 쉽게 재생산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 군사교리나 규범은 미국적이었던 반면, 병영문화는 식민지적 유산을 재생산하여 병사들의 신체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구속하였고, 철저한 상명하복식 명령과 복종의 문화가 한국군에 자리잡았다.

이런 병영문화가 크게 변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근대화 시기에 군은 일반적으로 일반사회에 비해 선진적인 조직 및 테크놀로지를 먼저 채용함으로써, 초급장교나 병사들이 군생활에서 이를 습득하여 사회로 복귀한 후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었다. 박정희대통령은 국민개병제의 원리를 철저히 시행되면서 해이해진 군의 기강을 바로 잡았으며, 특히 근대식 군사규범과 조직관리법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 시기 베트남전쟁에의 참전은 강력한 군기 및 군율을 강조하는 문화를 한국군 전체에 확산시켰다.

그러나 총력안보를 내세운 북한과의 체제경쟁으로 인하여 국방비 예산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병영시설이나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군사정권의 속성으로부터 유래하는 군 엘리트 장교에 대한 우대정책과 연줄에 의한 군대조직관리, 그리고 병영문화의 사회와의 단절 때문에 많은 문제를 낳았다. 1970년대 이후 점차 군과 일반사회, 특히 대기업의 근무여건 및 기술수준이 역전되고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군에서 배울 것이 없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이것은 군 복무에 대한 기피현상의 한 요인이 되었다.

군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신뢰의 수준 또한 군대인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군의 정당성은 '1980년 광주'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흔들렸으며, 이 때문에 공공연하게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로 간주된 병역의 의무가 도전받았다. 어떻게 보면 1980년부터 오늘날까지의 한국군의 역사는 이때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이 충격은 깊고 큰 것이었다. 더구나 1980년대 민주화이행

기에 군대는 시민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처리하는 장소가 되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군내 민주화의 지체로 인하여 은폐되었다. 누적된 군의문사 문제는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수준을 저하시키면서 군대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남북이 분단된 채 50년 이상을 극심한 체제 경쟁을 하면서 이른바 ‘총력안보’가 강조되던 상황에서 병사들의 인권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엄격한 군율과 군기가 강조되고, 또한 무엇이든지 명령을 내리면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군인정신이라고 교육되었다. 여기로부터 극단적인 권위주의, 편법주의, 수단주의가 관행화되었다. 이 때문에 병영문화내에서는 병사들의 자조적인 표현들이 발전했으며, 사회에서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심지어 군인은 인격을 가진 주체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병사들의 동료에는 인간됨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엄격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같이 공유했다는 사실로부터 나온 부산물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이러한 상황은 많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군부 상층권력의 탈정치화는 한국군대를 새로 태어나게 만든 계기였다. ‘민주군대’라는 용어는 정치적인 차원을 벗어나 사회적인 차원으로 의미를 확충하여, 점차 군대내의 수평적 관계들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의 군의 변화는 세계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해 남북간의 긴장과 체제경쟁의 부담이 줄어들고, 군 조직운영에서의 연고주의가 크게 약화되면서 합리주의적 조직관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군의 탈정치화, 합리화는 병사들의 인권을 고려할 수 있는 지평을 넓혔다.

이런 구조적 조건의 변화는 과거의 병영문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장병의 인권문제는 항상 군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들을 통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기존의 병영문화에 대한 비판은 여러 각도에서 제기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젠더적 시각이었다. 이런 시각은 1999~2000년의 군가산점 폐지 논쟁을 통해 세련되었다. 이들은 주로 한국의 군대경험이 남성중심적, 가부장제적 특권의식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군 경력에 대한 우대조치가 젠더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하여, 많은 자극을 주었다. 이와 함께 병역 부담의 균등성 문제가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국면에서 큰 이슈로 등

장하였다. 유력 정치인 자녀의 병역기피 의혹을 둘러싼 논쟁은 국민 개병제의 정당성과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병영문화에 대한 또 하나의 강력한 도전은 2001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이었다. 이 논쟁들은 과거의 구타나 가혹행위 문제를 넘어서서 병역제도와 종교, 또는 양심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군대문화를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런 논쟁들의 사회적 효과는 무엇보다도 병영문화에 문제점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1999년까지는 명백히 “근원적 대책보다 사고예방 및 후속조치에 치중”했다면, 2000년부터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편, 2000년의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가 좀 더 개방적으로 군대조직과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남북한 사이의 긴장의 완화가 국가경영에서의 심리적 ‘여유’를 제공한 셈이다. 또한 이것은 한국군의 병영문화의 논의에서 제도적 차원의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차원의 문제를 고려하도록 만들었다.

최근의 병영문화의 급속한 변동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신세대 병사들의 출현이다. 2000년 이후 이른바 신세대 병사들의 하위문화가 병영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근래에 입대하는 세대들은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난 연령집단으로 가정적으로 소자화된 이후에 태어나서 독자이거나 소수의 형제밖에 없으며, 모두가 부모들의 관심을 독차지한 가운데 가정에서 중심적인 위치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유분방하고, 자기중심적이다. 이들은 또한 민주화 이행기 이후에 중고등학교를 다닌 세대이므로, 그 이전의 이념적 갈등이 첨예해졌던 시기에 학교를 다닌 세대와 구별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관심이 적고 자기세계에 몰입하며, 간섭이나 명령을 싫어한다. 또한 각종 통신장비와 디지털 문화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이들은 ‘금지 일변도의 통제’를 참지 못하고, 인권침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병사들의 이런 문화를 기성세대의 관점이나 기존의 조직관리기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심화되고 있는 군대내의 세대간 문화격차는 병영병화의 개선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조직위계간 격차는 세대간 격차와 중복되어 나타나며, 이의 극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05년은 한국의 군대인권과 병영문화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해라고 할 수 있

다. 육군 훈련소 인권침해사건이나 전방부대 총기사건은 현재의 군대 인권실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육군, 또는 국방부 차원의 종합적인 인권개선, 병영문화혁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본격적인 노력이 경주되었고 실제로 큰 성과가 있었다. 정치민주화 또는 시민사회의 민주화가 군 내부의 민주화와 인권개선 노력에 영향을 미쳤다면, 최근 개선된 병사들의 생활 및 인권보장의 상황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서 오히려 시민사회의 평가가 변화의 속도에 뒤진 일종의 문화지체현상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화이후 병영문화에 변화, 장병들의 인권의 개선은 시민사회의 비판과 군 당국의 노력의 결합의 산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리를 종합해본다면, 오늘날 한국의 '병영문화와 군대인권'에 관한 주요 연구과제로는 첫째 한국의 병영문화를 만들어낸 역사적 유산과 이에 대한 정리, 둘째, 정치민주화에 따른 군대내 병영문화의 변화에 대한 연구, 셋째, 경제성장 및 민주화 이후의 시기에 자란 장병들의 가치관과 신세대 문화의 수용에 관한 연구 등이다. 한국군 창설기에 전쟁 및 전쟁이후 지속된 체제경쟁으로 인한 군대조직의 팽창과 이 과정에서 형성된 병영문화, 열악한 재정에 기초한 군대조직관리방식과 이에 조응하고 있는 병영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 그리고 민주화 이행기에 발생한 강력한 이념갈등과 국가권력의 통제, 체제경쟁의 실질적 종식과 민주화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권문제, 또는 정치사회 민주화와 군대 민주화의 시간적 격차에서 발생하는 문제, 군 인권개혁과 이에 따르지 못하는 시민사회의 병영문화에 대한 인식의 격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3. 육군의 인권개선 노력과 시민들의 인식

1)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육군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2003년 이런 노력이 가시화되었다. 육군은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장병상호간 '존중과 배려'를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4년 8월에는 병 교육기관

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항들을 감찰하는 활동을 2주간 전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2004년 10월 병 교육기관 쇄신대책을 수립하여 25개 과제를 하달하였다. 연말 육군본부 평가회의에서 인권침해사례 중 고질적인 구타나 가혹행위는 대부분 근절되었으나 일부 폭언이나 욕설행위가 잔존하고 있어서 주기적인 진단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종합적인 인권개선계획에 입각한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었고 여전히 '하달'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 1월, 육군 훈련소의 인권침해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다. 모든 신병교육기관의 훈련방식을 재진단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인식과 함께, 기존방식으로 과연 인권개선 관련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장병 기본권 개선을 위한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감찰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인사, 작전, 공병, 감찰, 헌병, 법무 등 6개 부서의 장군급을 위원으로 하는 육군 인권개선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 인권개선위원회는 군 인권개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교육, 상담 및 조사, 실태확인, 복무여건개선 등 6개 분야에서 시급한 현안업무 65개 과제를 추출하여 시행하였다. 이것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병기본권 확립 사업과 연계하여 전 부대, 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었다. 육군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신병교육 및 부대훈련체계를 개선하며, 월단위로 분석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5월 31일에 열린 신병교육발전 대토론회에서 신병교육의 훈련목표를 현실적으로 재정립하고, 기본권 보장 내용을 신병교육지침서에 반영 개정하였다. 8월에는 기본권 전문상담관 6명을 선발하여 시험운용함으로써, 이 제도의 실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10월부터는 육군 리더십 센터가 출범하여 인권존중의 리더십 배양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착수하였다. 또한 기본권보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2005년 4월부터 얼차려 방법을 규정으로 제정하여 얼차려의 의미를 처벌이 아닌 체력단련개념으로 바꾸었으며, 얼차려의 종류와 강도가 기준에 따라 자세하게 규정되었다. 신병교육기관의 소원수리 방법과 횡수를 개선하였고, 격오지 부대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원격지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훈련병 병영시설 개선 조기 추진계획을 세웠고, 그동안 인권침해 장소의 하

나로 지목되었던, 육군교도소와 수사과정의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시도하였다.

2005년 연말에 열린 육군인권개선위원회 평가회의에 따르면, 총 65개의 계획과제 중 43개의 과제를 완료하고 22개 과제는 지속과제로 분류했는데, 추진성과는 크게 6개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첫째는 육군 기본권 개선 종합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군 기본권 개선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훈련소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처리했으며, 군인복무기본법은 제정 중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넷째는 전 신병교육기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시설개선을 하였고, 다섯째, 제대별 기본권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기본권 전문상담관을 확충해가고 있으며, 여섯째는 장병기본권 교육체계를 확립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육군인권개선위원회의 설치가 가진 가장 큰 의의는 군대인권 관련 최대 쟁점이었던 기본권보장과 전투력의 관계문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인권개선위원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군에서 기본권보장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일부 간부들이 여전히 장병들의 기본권 보장과 강한 군대는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의식의 대전환을 촉구하였고, 간부들의 리더십개발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즉, 쌍방향 의사소통과 상호존중, 배려에 기초한 리더십이 지향되었다. 아울러 신세대 장병들이 생활해온 환경에 걸맞는 군대생활환경의 조성, 그리고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병영문화의 혁신을 강조하였다.

2)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병영문화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노력은 2005년 6월 군 총기사고가 계기가 되었다. 육군의 인권개선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GP 총기사고는 인권개선의 문제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도록 자극하였고, 이에 따라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군대인권의 개선을 모색하도록 만들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5년 7월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었고, 여기에서 첫째, 장병의식구조 및 병영실태 전반에 관한 정밀진단, 둘째, 신세대 병사들의 특성에 맞는 군대문화 및 조직체계 재정립, 셋째, 군복무제도 개선

및 사기, 복지증진방안, 넷째, 군대 사고우려자 조기식별 및 처리방안, 다섯째, 병영시설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병영문화개선위원회는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9명, 실무지원단 4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현장조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적인 개선책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선진병영문화' 비전을 '인권존중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병영생활'로 잡아 총 9개의 개선과제를 설정하고 총 30개의 세부실천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9가지 과제의 첫째는 장병 가치관 정립으로, 군 고급간부들의 의식전환, 체험학습을 통한 민주시민의식의 함양, 가치관 연구센터의 설립 등이다. 둘째는 장병들이 군복무를 '잃어버리는 시간'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자기계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이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중단 없이 학습이 가능한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는 군복무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사회적응교육이나 특수지역 근무수당, 또는 병사들의 봉급을 인상하는 것이다. 넷째는 인권개선위원회의 활동과 중복되는 것이지만,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인권담당관 신설, 민간전문가에 의한 군 인권보장기구 설치 등이다. 다섯째는 자율적 생활보장이다. 이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병영을 개방하고 병사들의 내무생활을 통제형에서 자율형으로 개선하며, 존중과 배려의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선진형 리더십의 개발이다. 지휘통솔의 핵심을 상하간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삼고 부하를 함께하는 인격체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부 선발방법의 개선, 그리고 학교기관에서의 리더십 교육 강화, 초급간부의 리더십 발휘여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병사들의 계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군 조직관리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병영문화개선위원회가 검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일곱째는 복무 부적합자 관리제도의 개선이다.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대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적절한 판정으로 인한 입대 부적합자의 입대를 차단하며, 징병검사체계의 보완,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조치절차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여덟째는 사고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는 병사들의 사망사고가 갖는 가족적 의미에 주목하면서 위험의 문제와 대형사고 발생 시의 대처를 보다 과학적으로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사고에 의한 시민사회의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런 여러 가지 대책 외에 가장 중요한 아홉 번째 항목이 병영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2003년부터 시행중인 병영시설 개선 중장기계획을 보완하여, 군 구조개편 및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2단계로 추진 하며, 2009년까지의 1단계로 시설의 50%를 개선하되 격오지 부대의 열악한 거주 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런 과제의 추진을 위해 2006년까지 소요되는 예산은 3,220억원이다. 국방부는 이런 과제들을 2008년까지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국방개혁추진위원회에 병영문화개선 팀을 지속적으로 운영 하기로 하였다.

4. 인권개선 실태와 쟁점

1) 인권개선 실태

육군의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관하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다. 종합적인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요 군사통계가 비밀로 분류되어 정확한 정보에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개된 자료 중에 가장 개괄적인 자료 의 하나가 군내 사고의 추이에 관한 통계이다.

이 표에 따르면, 군무이탈의 사례는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현저하 게 감소하였고, 사망사고의 경우 1990년대 내내 꾸준히 감소하였다. 2004년의 통 계가 보여 주듯이 아직도 군대 내에서 1년에 130명 안팎의 젊은이들이 각종 사고

〈표 1〉 군내 사고의 추이

	1993	1998	2003	2004
군무이탈	1923	1815	1380	1086
사망사고	343	248	158	134

자료: '21세기 강군 육성' 을 위한 선진병영문화.

나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지만, 1980년대에는 매년 600명 가까운 젊은이가 각종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연평균 사망자 수가 거의 1/4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사망사고 중 자살률은 사회의 일반 자살률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 되었다. 군기사고의 경우 2005년은 전년대비 23% 감소하였고, 기본권 보장의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관모욕이나 명령불복종 등의 군기사고도 전년대비 24% 감소하였다. 군대 내 사고 건수로 볼 때 인권 상황이 최근 몇 년 간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군에서 조사한 자료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의 한홍구 교수 팀이 실시한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06)는 2005년까지의 육군의 인권개선 노력이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군 전체의 인권수준을 우리 장병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자. 군 전체의 병사의 인권수준을 묻는 질문에 현역 응답자의 55.6%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우수하다는 응답은 28.2%였으며, 나쁘다는 응답은 16.2%였다. 반면 같은 시기 전역 18개월 미만의 예비역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예비역들은 군의 인권수준을 우수하게 보는 응답이 10.6%, 나쁘다고 보는 응답이 42.3%였다.

이처럼 현역과 예비역간의 응답이 차이가 나는 것은 최근 들어 군대에서 구타, 가혹행위 근절 등 병사 인권문제에 대해 부적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동시에 응답의 환경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어서 일방적인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

〈표 2〉 군 전체의 인권 수준에 대한 평가

평가	현역	예비역
매우 우수	77(5.9)	1(1.0)
우수	293(22.3)	10(9.6)
보통	730(55.6)	49(47.1)
나쁨	181(13.8)	39(37.5)
매우 나쁨	31(2.4)	5(4.8)
합계	1312(100.0)	104(10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06).

에서 설문에 응한 예비역들과는 달리 현역들은 있는 그대로 설문에 응답하기 어려운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인권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현역 응답자의 52.6%가 군대의 특성상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한 반면, 사회와 동일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자도 45.2%로 나타났다. 한편 예비역 대상 조사에서는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응답이 82.5%, 사회와 동일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은 16.5%로 나타나 현역 병사들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역들이 현재 군의 인권수준에 대해서는 <표 3>에서처럼 현역 병사들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군대니까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다소는 모순된 답변태도를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2006)는 이를 한편으로는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나는 군 생활을 했다'는 일정한 보상심리의 반영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군에서 가해자 위치에 서 있다가 사회로 나온 예비역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응답으로 해석하였다.

이 설문의 응답을 보다 구체적으로 현역의 계급에 따라 분석해보면, 군대에서는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응답은 병장 계급에서 60.6%로 가장 높았고, 이등병이 44.4%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사회와 동일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은 이등병이 51.4%로 가장 높았으며, 병장이 37.8%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군에서의 인권에 대한 의견에 대해 현역 병사들은 각자가 서있는 위치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예비역들로부터 '군대의 특수성에 따른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실제 인권실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신체의 자유 영역은 어떠한가. 2002년

<표 3> 병사인권에 대한 시각

	현역		예비역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군대의 특성상 어느 정도 제한은 불가피함	668	52.6	85	82.5
사회와 동일한 인권기준을 가져야 함	575	45.2	17	16.5
기타	28	2.2	1	1.0
합계	1271	100.0	103	10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06)에서 재구성.

〈표 4〉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 여부

조사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국방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02년(예비역·휴가병)	04년(현역)	05년(예비역)(현역)	
구타	60.32	23.5(구타나 가혹행위)	51.9	6.0
가혹행위	65.7		62.5	9.6
언어폭력	조사하지 않음	58.8	28.4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와 2004년 국방연구원의 조사 결과,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2006)가 2005년에 조사한 결과를 비교해보자.

이 〈표 4〉에 나타나듯이 2002년의 조사와 2005년의 조사를 비교한다면 구타와 가혹행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예비역과 현역을 비교하면 양자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구타경험의 경우, 예비역은 51.9%인데 비해 현역은 6.0%였고, 가혹행위 경험은 예비역이 62.5%인데 비해 현역은 9.6%였다. 현역으로만 제한하여 비교한다면, 2004년 국방연구원의 조사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경험' 한 경우가 23.5%인데 비해 2005년의 조사에서는 각각 6.0%와 9.6%로 나타났다. 어떻게 보더라도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은 현격하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06)의 보고서에 나타나있는 통신의 자유를 보자. 통신의 자유에 대한 만족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2004년부터 최근까지 군복무를 한 예비역은 공중전화 사용에 있어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선임병의 눈치'가 56.3%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현역의 경우 '시설 부족'이 62.5%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선임병의 눈치로 공중전화 사용에 있어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3%였다.

휴식의 권리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응답자 70% 이상이 자유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 응답을 한데 비해 2005년도 조사에서는 1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자유시간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사생활의 자유를 나타내는 지표인 '부대 내에서 혼자 있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질문에서, 현역 응답자 중 56.6%가 '장소가 없다'고 하였고, 43.2%

는 '장소가 있다'고 하였는데, 전역 18개월 미만의 예비역의 경우 응답자 중 71.2%가 '장소가 없다'고 하였고, 28.8%는 '장소가 있다'고 하였다.

식사에 관한 만족도의 경우, 현역 응답자 중 56.5%가 '만족 한다'고 하였고 15.1%는 '만족하지 못 한다'고 한 반면, 전역 18개월 미만의 예비역들은 응답자 중 33.7%가 '만족 한다'고 하였고 39.4%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점에서 식사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에 대한 만족도를 예비역과 현역을 비교했을 때 무려 22.8%가 차이가 난다. 과거에 비해 병사들의 급식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것은 각 군이 식단에 대한 설문조사와 요일 및 일일 식단을 개선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2006)에 따르면, 학력, 출신지역, 부모의 영향력, 외모 등 각종 차별에 대한 설문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2% 내외로 매우 낮았다. 또한 학력차별, 지역차별의 문제는 지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실시한 국민인권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일반 국민의 차별 경험과 비교해 볼 때도 군대에서의 차별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학력차별'은 일반 국민이 경험하는 정도에 비해 병사들의 경험 정도가 더 낮았으며, 여타의 항목은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군대에서의 차별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보다 덜한 것은 나이, 학력, 출신지역, 경제적 지위 등을 불문하고 계급과 명령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사회라는 군대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원수리 제도가 비밀리에 잘 운영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역 응답자의 43.3%는 잘 운영된다고 응답한 반면, 15.5%는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예비역 응답자들은 19.4%가 잘 운영된다고 답한 반면, 49.5%는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2006년의 보고서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항목은 월급과 내무실의 공간문제였다. 현재 병사의 월급(상병기준)은 4만 6천원으로, 2005년 현재 최저임금인 시급 3천 100원과 비교할 때 약 1/16 수준이었다. 월급에 대한 설문 응답에서 병사들은 월급으로 군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더 컸으며, 이로 인해 부족한 부분을 집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해결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

로 나타났다. 월 10만원~20만원으로 월급을 인상하기를 희망하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현역복무자들은 병역특례자에 비해 보수의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병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병사의 월급을 시장 임금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이 수령하는 월급은 군 생활에 필요한 최소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의식해 국방부는 병사의 월급을 2006년에 전년대비 40% 인상된 6만 5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병사들의 내무실 주거공간은 지난 50년 동안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국가인권회의 조사보고서(2006)는 내무반(생활관) 공간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의 평균 주거공간보다 좁다고 지적했다. 또한 냉난방 부실의 문제와 사생활 및 편의시설 확충의 문제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부분이 매우 열악하다고 보고하였다.

2) 최근의 병영문화와 장병인권에 대한 시민적 인식

다수 국민의 군대 경험은 근대 국민국가의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군대경험 자신의 생애사에서 매우 이색적인 경험에 속한다. 군대생활은 평소의 생활과는 다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또 매우 집단주의적이다. 군에서의 생활양식은 기존의 생활양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어서 재사회화의 강도가 강하고 이 때문에 심리적 긴장이 크다. 이 때문에 군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되며, 그 기억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군 제대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군대문화가 거의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군대인권의 급속한 개선은 별로 인정할 수 없는 현상이다.

2005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군대,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요양원 등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초·중·고등학교, 기업체, 방송 등 언론기관 등 기관별 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에서 일반인의 경우 군대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74.2%로 가장 높았고(다음은 경찰 72.8%),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경우도 군대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6.0%(다음은 교도소 등 구금시설로 94.1%)로 나타났

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 군대를 꼽은 사람은 87.8%로 교도소 등 구금시설 91.1%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일반인과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그리고 전문가 집단 모두, 군대에서의 인권침해를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¹⁾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첫째, 군대 내의 인권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개선되었지만, 사회의 인권 상황과 기대치는 더 빨리 상승한 측면이 있다. 군 당국은 오늘의 군대와 과거의 군대를 비교하면서 과거에 비해 개선된 점을 강조하지만, 군에 입대한 청년들, 그리고 자식이나 동생을 군에 보낸 가족들은 바깥 사회와 군을 비교하게 된다. 예컨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전방시찰에서 대부분의 남성 국회의원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했으나, 이연숙 전 의원은 이런 평가는 동시에 현재의 사회에서의 생활수준과의 비교평가의 맥락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950년대에는 군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현대화된 집단이었다. 문맹이 많고, 농촌 청년이 조직생활의 경험도, 과학기술과의 만남도 갖기 어려웠던 시기에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라는 말이 나름대로 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속도가 군을 훨씬 앞질러 간 1980년대 이후 군대가 아무리 많이 좋아져도 민간조직과의 상대적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한홍구 외, 2006).

둘째 이유는 시민들의 다수가 자신의 과거의 군 경험에 기반하여 군대 인권상황을 말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통통신의 발달, 휴가 및 외박/외출제도의 개선으로 사회와 군대의 거리가 매우 좁아졌다. 군 내부의 동향이 상대적으로 쉽게 시민사회에 알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성과에 기대어 말한다면, 최근의 장병인권실태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의 상황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수 십년 전의 병영문화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²⁾ 또한 군대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지고 편차가 커졌다. 따라서 최근에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는 장병들의 인권실태와 이에 따르지 못하는 시민사회의 인식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총괄보고서(1)」, 2005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주)한국리서치.

2) 예컨대 기합에서 얼차려로 바꾼지 오래되고, 얼차려의 방식도 크게 바뀌었으나 여전히 이에 관한 이미지가 잔존하고 있고 이것이 군대이미지를 규정하고 있다.

병영문화와 장병들의 인권문제는 군대 외부에서 발생하는 요인들과 내부에서 발생하는 요인들의 결합에 의해 규정된다. 군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장병들의 인권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즉 인권개선을 위한 군 내부의 개혁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구조의 점진적 변동, 그리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3) 쟁점

군대 인권은 2005년 육군 당국의 적극적 개선노력에 의해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크게 보면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군 당국이 대책을 세워 문제를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은 사실상 군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어려운 결

〈표 5〉 장병의 권리보장 관련 쟁점현안의 분석

쟁점	현황 및 실태	군 의견분석
병과배치청구권	신검시 적성분류 각군 장정 적성 고려 병종 부여 배속 후 사유발생시 심의, 병과전환 가능	청구권 인정시 기피병과 공동화 현상우려 적성에 따른 주특기 세분류 부여는 필요
근무지재배치 청구권	6개월 이상 근무시 사유에 따라 재배치 가능 → 활용 저조	함정근무, 벽오지 기피 등 청구권 오용 우려 재배치 청구 → 재배치 권한 위임 검토 고충상담 강화
정신상담청구권	제대별 병영 전문 상담관(군의관, 군종, 주임원사)운용 → 2중임무로 실효성 미흡	내실 있는 상담체계 강구 필요 상담기준 설정 필요
안전권	안전대책 강구, 사고예방 노력 지속 → 예산/인력 제한으로 위험 노출 (노후장비, 무리한 임무 수행)	합리적 사고와 부대지휘 등 의식 변화 필요
청원권/ 이의제기권	고충심사 청구권리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한정 장병고충처리는 지휘계통/고충센터 이용 국방부/ 각군본부 '군인고충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 체계적 운용 미흡	장병 고충 해소(청원)제도 재정립 필요 병사에 대한 고충 청구 제도 도입 방안 강구 필요

정의 연속인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2004년의 국방연구원의 보고서이다. 이를 분석해보면, 민간부문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이슈들을 분석하고, 이의 타당성과 수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표 5>와 같다.

위 표에 따르면, 쟁점이 되는 장병의 권리는 병과배치청구권, 근무지배치청구권, 정신상담청구권, 안전권, 청원권 등 5가지 종류로 대부분은 적극적 검토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근무지배치 청구권은 2006년 상반기에 여론의 초점이 된 바 있다.

이런 여러 권리목록과 함께 군 내부에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 권리보호 제도들은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이런 제도들 중에서 일부는 현재의 군 조직상 수용될 수 있지만, 국방감독관 제

<표 6> 장병의 권리보호 제도관련 쟁점의 분석

쟁점	현황 및 실태	군 의견분석
병영생활규범의 법제화	군기강 확립 종합대책 (03.8)시행중 군 사법 제도 개선 추진중	실효성 평가 후 보완 필요 병영생활 규정의 법제화는 곤란 징계사유 및 처벌 규정의 세부적 명시 필요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에서검토중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 기능 추가 혹은 별도 기구 설치 방안 검토중)	음부즈만 운영시 군 지휘체계 문란 현상 발생 가능 도입시는 청원 분석을 통한 정책 대안제시 위주 임무 수행 바람직
군내중개위원 제도 도입	현 운영중인 계층별 간담회와 유사	제도화보다는 각급 지휘관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 방안 강구 필요
외부전문가참여 군인권교육 실시	인성 교육, 사고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인권 교육 실시중	외부기관에 의한 인권 교육 수용 가능
군 수사체계 정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검토중 (군 검찰에 대한 소속부대장의 지휘관할권 축소, 군검찰의 실질적 수사 지휘, 수사 내용 공개 및 민간 전문가 입회 등)	지속 개선을 통해 민원 불식 필요

도나 군 수사과정에서의 외부자의 참여는 단기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에 관한 매우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쟁점에 관한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장병기본권 지침서나 장기계획이 수립된다는 점이다.

최근에 제기된 인권개선 관련 쟁점들과 이에 관한 검토는 2006년 초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들에 관한 것이었다. 2005년 말에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표 7〉 군 인권관련 현안 핵심과제

구분	핵심추진과제	육군의 검토결과	육군의 검토의견
군인의 인권보호	구타-가혹행위 근절	수용	
	인권교육	수용	
	수사과정 민간단체의 조사활동참여	수용 어려움	범인, 피해자 등의 명예와 사생활침해로 인권훼손 우려 특정목적을 지닌 민간단체의 개입과 수사간섭 등으로 수사 결과 변질우려/ 실제적 진실 발견 제한
	군 수사규정 준수	수용	
	성폭력예방, 제도적 장치마련	수용	
	고충상담체계 구축	수용	
	외부진정권 및 방문조사권확보	수용 어려움	군내 고충처리제도로 처리가능 군의 특수성, 지휘권확립 저해
양심-종교의 자유	국가보안법 폐지		육군 검토 사항이 아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수용 어려움	합법적 병역기피수단 제공우려 형평성 및 현역장병 사기저하우려
	군인의 종교활동 선택권 보장	수용	
	군종장교 임명대상 확대	부분 수용	국방부 기준(신자수 2%)을 충족시 수용 가능
성적 소수자의 기본권보호	성적 소수자 기본권보호	수용 어려움	군내 성적 군기 및 군기강 문란

군 인권정책에 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인권실태조사에 근거하여 통신의 자유에 관한 2가지 정책방안 등 총 11개 부문에서 30개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고, 병영문화의 개선과 관련하여 4개항을 제시하였다. 가장 어려운 것은 법적 제도적 개선으로 총 16개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일부는 이미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새로운 제안도 있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권고하였다. 육군과 관련된 과제는 12개 과제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육군의 최종적인 검토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육군 인권개선위원회의 내부 검토결과는 <표 7>과 같다.

이에 따르면, 12개의 과제 중 현행 제도적 틀 내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은 6개의 과제이고, 검토대상이 아닌 과제가 1개, 부분수용 과제가 1개, 수용하기 어려운 과제가 4개로 나타난다. 수용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에서 검토한 인권개선위원회나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했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과제들이며, 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도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수용하기 어려운 과제들은 첫째, 수사과정에 민간단체의 조사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문제와 둘째 군인의 외부진정권 보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 조사권 확보 문제, 셋째,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 넷째, 성적 소수자 기본권 보호문제 등이다.

4) 해결 방향

현재 쟁점이 되는 장병의 권리 및 권리보호제도에 관해서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당성 분석과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장병기본권 지침서나 장기발전계획서에 반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육군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4개 과제는 대체로 현행 법적 제도적 틀을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정서에서도 상당 부분 벗어나 있는 안으로 '군의 존재목적에 위해를 끼친다거나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국민 일반적 정서³⁾를 무시하고 이를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군의 전투력과 인권의 보장이 서로 상충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출발하였지만, 현재의 사회적 보수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군의 존재목적이 장병의 인권보호에 있는가'라는 반론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급진적인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안에 대하여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간에 심각한 의견차⁴⁾를 노출하고 갈등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은 문제해결에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공청회 등을 통하여 현안을 국민들에게 과감히 공개하고, 전문적인 통계기관 등에 의뢰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등의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할 문제라고 본다.⁵⁾

또한 군에서도 인권 및 병영문화의 개선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권항목을 설정하고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 통계지표를 하루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협조하에 지표에 맞는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인권개선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신뢰를 쌓아갈 필요가 있다.

5. 앞으로의 과제

인권은 간단히 말하면 '사람취급'을 해주고 또 받는 것이며,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것이다. 군대 인권은 기본적으로 군조직 내부의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신뢰가 군대 구성원들의 인권, 특히 자존심과 자신감에 영향을 준다. 군의 근무여건이 기업이나 학교, 기타 비정부단체 등 일반사회부문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다면, 병사들의 자신감, 자존심이 손상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군의 국민적 이미지는 군대인권에

3) 이에 대해 신뢰성 있는 여론기관에서 구체적인 국민여론조사를 한 통계는 현재로선 없다.

4) 이 의견차는 두 기관의 정체성에서 찾을 수 있다. 국방부는 국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임무를 주로하며, 이에 반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 각자의 인권향상이 소관 업무이다. 따라서 조직내부의 견지에서 문제를 보면 사사건건 의견이 상충할 수밖에 없다.

5)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할 사안은 근본적으로 국회 및 정부기관의 소관업무로 육·해·공군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육군의 입장이다.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군대인권은 어떻게 하면, 장병들이 소극적으로는 일반시민들과 동등한 인격체로써, 적극적으로는 귀한 존재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군 인권문제는 계획과 명령, 또는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한국 육군이 처한 구조적인 위상의 문제와 함께 수 십년간 누적된 병영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관행과 심리적 망탈리떼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대인권은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와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가 섞여 있다.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는 장기적인 연구과제에 속한다. 구조적인 문제를 혼동하여 선불리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육군의 노력과 성공적 결과는 충분히 평가되어야하나 동시에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였던 가시적 성과주의는 경계되어야 한다. 제도개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문제들에 대한 보다 차분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안보환경을 가진 우리나라는 군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념적 갈등으로 인하여 전쟁 및 군대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매우 부진했다.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참전경험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물론이고, 특히 군대(관리)에 관한 조직사회학적 연구는 일종의 군사비밀로 간주되어 터부시되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여느 다른 분야보다 늦었으나 최근 병영문화 및 군대조직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방개혁 2020이라는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군을 현대화하면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우리는 이제 의식개혁이라는 말을 반복하기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 복지수준의 향상, 법률적 제도와 조직의 재편성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특히 군대인권의 보장이 전투력의 향상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한반도의 긴장도는 군대조직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장병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 평화정책의 성공은 군대규모의 감축을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병사들의 기본권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은 2000년을 계기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것이 구조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채 아직도 변동가능성이 큰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최근 한국군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교류의 진전과 평화 무드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날로 강화되고 있는 미일군사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등 정치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내부적으로는 병력자원의 감소, 민주화의 군 내부로의 진입, 이른바 신세대 병사들의 적응문제, 빈발하는 사고와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 등 수많은 내부적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 당국은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병력자원의 장기적 추세를 감안하고 동시에 장병들의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최근의 병력자원의 감소는 군대 인권의 보장을 강화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 문화의 개혁은 한국군을 첨단정예군으로 재편하면서 확고하게 국민속의 군대로 자리잡는 장기적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것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육군은 군대인권이 전투력과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전투력의 향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군대 인권은 군 성원들이 군 내부성원들로부터의 인간적 존엄성을 인정받을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로부터도 충분한 신뢰를 받을 때 비로소 보장된다.

한국군의 장기적 개편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정의 종속변수이며, 동시에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숙 및 경제발전의 종속변수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쟁점들은 단지 수용불가라는 판단에 의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과제와 단기적 과제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장병들의 자유권적 기본권 확립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현재의 적극적 인권론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예컨대 양심적 병역거부, 군 가산점과 성차별논란, 국민개병제 전환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관한 논의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에 따른 권위주의의 후퇴는 매우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권위자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나 권위자체는 살아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권위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권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병영문화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지휘관 평가시스템의 전환도

모색되어야 한다. 부대원의 사고가 지휘관의 승진여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지휘관들은 병영문화의 창조적 개혁보다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기 쉽다.

우리의 오늘의 문제제기는 여전히 임시적인 것이며, 병영문화와 장병들의 인권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한편으로는 보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 및 시민사회에서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2005), 〈국민 인권의식 조사〉.
- 국방부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복무제도개선소위원회, 〈1차 소위원회 개최 계획서〉, 2005.
- 국방부(2006), 〈“21세기 강군 육성”을 위한 선진병영문화〉.
- 국방부(2004), 〈국방백서 2004-남북 군사력 비교〉.
- 권인숙 외(2004),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권인숙(2005),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 김광식 외(2004), 〈장병기본권 확립방안연구〉, 한국국방연구원 인력개발연구센터.
- 김광식(2006), 《장병 기본권 지침서》, 국방부.
- 김광식, 〈병영문화 개선 논의의 추이와 과제〉,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2005), 인권실천시민연대.
- 김광식, 〈장병 인권문제의 쟁점과 과제〉, 《열린우리당 장병기본권문제 확립을 위한 심포지엄》, 2005. 6. 21.
- 김병조(2002). 〈군에서의 인성계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제2회 인성교육 심포지엄 논문집, 공군사관학교/리더십학회.
- 김상균(2000), 〈군수사절차상 인권침해실태와 개선방안〉, 충성, 육군 3사관학교.
- 김선택(2002),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김형태 외(2002),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남기덕(2003), 〈병영생활의 자율성 함양을 위한 방안 연구〉, 국방정책 연구보고서.
- 류관석(2003), 〈군내 의문사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군의문사관련 정책토론회.
- 박정희(2002), 〈군사법원법상 강제처분에 관한 연구: 인권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공군대학.
- 백종천·온만금·김영호(2004), 《한국의 군대와 사회》, 나남.
-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2004), 〈군대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현황과약〉, 국가인권위원회.
- 송광섭 외(2003), 〈군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송기춘, 〈병영문화 개선의 전제와 과제〉, 국회인권포럼/인권실천시민연대 공동개최 토론회 자료집, 《군 인권의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005. 7. 5.

- 열린우리당 병영문화개선위원회(2005), <병영문화개선대책 대토론 자료집>.
- 오동석(2005), <인권의 관점으로 본 병영시설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인권포럼/인권 실천시민연대 공동개최 토론회자료집, 《군 인권의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온만금·김인수(2005), 《군대와 사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육군본부(2005), <육군 인권개선 종합추진계획>.
- 육군 인권개선위원회(2006), <국가인권위 인권정책 검토안 검토결과>(비공개자료).
- 육군 인권개선위원회(2005), <육군인권개선위원회 05 4/4분기 평가회의>(비공개자료).
- 육군본부(2004), 《군대와 기본권》.
- 육군본부(1999), 《병영 스트레스 원인과 대책》.
- 이계수 외(2004), <군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이계수(2003), <군대내 구타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법학연구회(편), 『민주법학』통권 23호.
- 이계수, <장병 인권정책의 목표와 지향점>, <장병 기본권 확립 방안에 관한 심포지움>,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2005. 6. 2.
- 이상목(2005), <장집인력의 현역입대 선호체계 확립과 국가봉사역할 확대 방안>, 기획예산처 정책연구보고서.
- 이연숙, <장병인권과 건전한 군문화 정립>, KIDA 국방포럼 05-2, 2005. 6.
- 이영환, <의무복무 사병들의 삶의 질과 복지문제>, 『상황과 복지』, 2003. 12
- 장영달(2002),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실태와 인식>, 2002년 정기국회 여론조사 결과 분석보고서.
- 조성식, <육군 인권개선위원장 백군기 중장 인터뷰>, 《신동아》 2006년 4월호.
- 조승욱(외)(2005), 《군대윤리》, 봉명.
- 한국국방연구원(2004), <장병기본권 확립방안>.
- 한홍구 외(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2006),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홍두승(2006), 《한국 군대의 사회학》, 나남.
- Goffman, E. Asylums(1961), Anchor Books.

Military Culture and Human Rights of Soldiers in Korea

Keun-Sik Jung*

It has been focused on military culture and human rights of soldiers as a hot issue after the transition to political democracy in Korea. Some NGOs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re interested in this issue and ask not only to seek the truth of past human rights violation incidents but also to promote soldiers human rights. Korean Army replied to this challenge and established the committee for promotion of soldiers' human rights.

Some survey researches show rapid promotion of military human rights by diverse institutional endeavors. Most valuable change is the recognition of the positive relation of soldiers' human rights to military empowering. But there are some unsolved issues related to the discrepancy of civil society and the authority of army, on one hand, and to different attitudes betwee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Authority of army. It would be necessary more systematic research and accumulative trust among them.

Key words: military culture, human rights of soldiers

* Professor of Dep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torical Sociology and Social Movement. ksjung@snu.ac.kr